

감정평가서

건명	이준승 소유물건(2025타경429)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법보좌관 정현철
감정서번호	헤림250408-6102-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헤림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및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박상현

감정평가액	사역삼천칠백이십팔만오천사백원정 (₩437,285,4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법보좌관 정현철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3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준승 (2025타경429)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4.17	2025.04.10 ~ 2025.04.17	2025. 04. 18	
감정 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489	토지	489	586,000	286,554,000
	건물	116.88	건물	116.88	1,280,000	149,606,400
	제시외건물	(7.50)	제시외건물	7.50	150,000	1,125,000
합계					₩437,285,4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소재 '신명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경매목적 감정평가건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규 및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음.

3. 대상물건의 개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토 지	기 호	지 번	면적 (㎡)	지 목	이용 상황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및 지 세	2024년 개별공시지가 (원/㎡)
	1	명례리 610-6	489	대	단독주택	보전녹지	세로(가)	자루형 완경사	252,400
건 물	기 호	지 번	용 도		구 조			연면적(㎡)	사용승인일자
	2	610-6 위지상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116.88 1층:89.0 2층:27.88	2020.07.16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4. 기준시점 및 실시조사 실시기간

가.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5.04.17.로 함.

나. 본건이 소재하는 대상물건의 소재지에서 실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5.04.10. ~ 2025.04.17.임.

5.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에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감정평가 조건

없음.

6. 감정평가방법

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 규정,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하였음.

나. 본건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와 제12조에 의하여 공시지가기준법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으로 평가액을 산정하되, 타 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과 시장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다. 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감가수정은 현상, 관리상태, 개보수의 정도 및 장래 이용가능년수 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법(정액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7. 그 밖의 사항

가. 본건 지상에 부합물 혹은 종물로 판단되는 제시외건물(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 기호ㄱ)이 소재하고 있어 실측사정 평가하였음.

나.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폐문 등으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관련공부 및 외부관찰에 의하여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매진행 및 응찰시 본건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한 재확인이 요망됨.

다. 본건 토지상에 컨테이너(첨부사진 참조) 1동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동가능하여 본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II. 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함.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선정하였음.

(공시기준일: 2025.01.01)

기호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A	장안읍 명례리 610-1	375	대	단독주택	보전녹지	세로(가)	세장형 완경사	281,000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 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2025.01.01 ~ 2025.04.17	0.375% (1.00375)	부산광역시 기장군 (25.01.01~25.04.17) (녹지) 2025.01.01 ~ 2025.02.28 : 0.202 2025.02.01 ~ 2025.02.28 : 0.101 $(1 + 0.00202) * (1 + 0.00101 * 48/28)$ ≈ 1.00375

※ 2025년 3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되어 2025년 2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라.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 인근에 위치한 바, 지역요인 동일함.(1.00)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격차율		비고
조건	항목	세항목	표준지	대상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1.00	대등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1.00	대등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1.00	대등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1.00	0.90	본건은 표준지 대비 조망에서 우세하나, 형상 등에서 열세함.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1.00	대등함.
		기타규제(입체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1.00	대등함.
		기타			
누 계			1.000	0.900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 36538, 1991. 12. 28), 대법원판례(1998.7.10선고 98두6067, 1993.9.10선고 92누16300)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평가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2) 인근 거래사례

[자료출처: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기호	소재지	토지 건물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단가 (원/㎡)	총거래가액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가	명례리 726-1	임	50 (2,446중)	보전녹지 (주거나지)	300,000	15,000,000	2023.12.22 -
나	명례리 604	답	513 (1,608중)	보전녹지 (주거나지)	301,900	155,000,000	2023.12.22 -
다	명례리 610	답	362	보전녹지 (주거나지)	552,486	200,000,000	2021.09.15 -
라	명례리 610-3	대 건물	374 84.41	보전녹지 (단독주택)	1,090,909	408,000,000	2021.07.26 (2020.07.23)
마	명례리 610-6	대 건물	489 84.81 (본건)	보전녹지 (단독주택)	936,605	458,000,000	2021.07.26 (2020.07.23)

※ 거래단가(원/㎡) = 거래가격/토지면적임.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인근 평가사례

[자료출처: 한국감정평가협회]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	평가목적
a	명례리 610-3	대	374	보전녹지 (단독주택)	643,000	2023.11.24	경매
b	명례리 610-7	답	424	보전녹지 (단독주택)	571,000	2023.10.04	경매
c	명례리 610-8	답	424	보전녹지 (단독주택)	571,000	2023.10.04	경매
d	명례리 610-1	대	375	보전녹지 (단독주택)	642,000	2023.07.07	경매
e	명례리 610-4	대	374	보전녹지 (단독주택)	642,000	2023.07.07	경매

4)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출방법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 기준한 표준지가격(사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기준시점 현재 표준지가격(비교표준지} \times \text{시점수정)}}$$

5)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정

구분	소재지	기준단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시산가격 (원/㎡)	격차율	
평가사례 (a)	명례리 610-3	643,000	1.01520	1.000	1.000	652,774	2.314	
표준지 (A)	명례리 610-1	281,000	1.00375	-	-	282,054		
산정 내역	시점수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녹지지역(2023.11.24 ~ 2025.04.17)					1.01520	
	지역요인	표준지와 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1.00	
	개별요인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기타	누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0
비교표준지는 사례 대비 제반 개별요인 대등함.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6)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평가전례, 실거래사례 등을 고려할 때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A:2.31) 으로 결정함.

사. 토지가액의 결정

기호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A	281,000	1.00375	1.00	0.900	2.31	586,390	586,000

※ 적용단가는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3자리로 하였음.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감정평가 개요

대상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거래시점으로부터 기준시점 현재까지의 지가변동을,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치형성요인 등을 종합 고려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나. 토지가액 산출근거

1) 비교 거래사례 선정

① 인근 거래사례 현황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지역	이용상황	거래가액 (원)	토지단가※2 (원/㎡)	거래시점
			토지	건물			거래단가※1 (원/㎡)	개별공시지가 (원/㎡)※3	사용승인일
나	명례리 604	답	513.4144 (1,608중)	-	보전녹지	주거나지	155,000,000	301,900	2023.12.22
							301,900	@260,200	-

※1 거래단가(원/㎡) = 거래가격/토지면적

※2 상기 개별공시지가는 거래사례 해당연도의 개별공시지가임.

② 비교 거래사례 선정사유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나)를 선정하였음.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

3)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지가변동률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음.

구분	기 간	지가변동률(%)	비 고
거래 사례 (나)	2023.12.22 ~ 2025.04.17	1.494% (1.01494)	<p>부산광역시 기장군 (23.12.22~25.04.17) (녹지)</p> <p>2023.12.01 ~ 2023.12.31 : 0.029 2024.01.01 ~ 2024.12.31 : 1.105 2025.01.01 ~ 2025.02.28 : 0.202 2025.02.01 ~ 2025.02.28 : 0.101</p> <p>$(1 + 0.00029 * 10/31) * (1 + 0.01105) * (1 + 0.00202) * (1 + 0.00101 * 48/28)$ ≈ 1.01494</p>

※ 2025년 3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 되어 2025년 2월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4) 지역요인

본건은 용도지역이 같은 인근지역에 위치한 바, 지역요인 대등함.(1.00)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5) 개별요인 비교

개별요인			격차율		비고
조건	항목	세항목	사례	대상	
가로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1.00	1.20	본건은 사례 대비 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함.
		포장			
		보도			
		계통 및 연속성			
접근조건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인근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1.00	대등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환경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1.25	본건은 사례 대비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에서 우수함.
	자연환경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인근환경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인근토지의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공급 및 처리 시설의 상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위험 및 험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특별고압선 등과의 거리				
획지조건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등	면적	1.00	1.15	본건은 사례 대비 면적, 고저, 경사, 이용상황 등에서 우수함.
		접면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1.10	본건이 지목(답:대) 에서 우수함.
		기타규제(임채이용제한 등)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1.00	대등함.
		기타			
누 계			1.000	1.898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6) 토지단가의 결정

기호	비교거래사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기호	토지단가 (원/㎡)						
1	나	301,900	1.00	1.01494	1.00	1.898	581,567	582,000

3.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시산가액

구 분	면적(㎡)	적용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기호 1	489	582,000	284,598,000	-

4. 토지가액의 결정

가.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비고
기호 1	286,554,000	284,598,000	-

나. 결정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평가액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면적(㎡)	적용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기호 1	489	586,000	286,554,000	-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III. 건물가액의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을 적용하되, 건물의 현상 등을 고려하여 실측사정하고 관찰감가하였음.

2. 대상건물 개요

기 호	지 번	용 도	구 조	연면적(㎡)	사용승인일자
2	명례리 610-6 위지상	단독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116.88 1층:89.0 2층:27.88	2020.07.16

3. 재조달원가의 산정

(1) 표준단가 결정

[출처: 한국부동산연구원 2024년 건축물 재조달원가 자료집]

기호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	내용연수
2	01-01-05-06	일반주택	철근콘크리트조 /박공지붕/아스팔트싱글	4	1,528,000	50 (45~55)

(2) 부대설비 보정단가 결정

위생급배수 등 각종 설비는 표준단가에 포함하였음.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3) 재조달원가의 산정

상기 사항을 기준으로 사용자재의 품질, 시공방법 및 시공정도 등을 비교하고, 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본 건물에 적용할 재조달원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기 호	용 도	재조달원가	내용년수
2	단독주택	1,400,000	50

4. 건물단가의 결정

기호	재조달원가 (원/㎡)	(총) 내용년수	실제 경과년수	유효잔존 내용년수	잔존 가치율	적용단가 (원/㎡)
2	1,400,000	50	4	46	46/50	1,280,000

※ 잔존가치율 = 잔존 내용년수 / (총)내용년수임.

4. 건물가액의 결정

기호	용도	면적(㎡)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2	단독주택	116.88	1,280,000	149,606,400	-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비고
토지(기호1)	286,554,000	284,598,000	-
건물(기호2)	149,606,400	149,606,400	원가법
제시외건물	1,125,000	1,125,000	관찰감가
합 계	<u>₩437,285,400</u>	<u>₩435,329,400</u>	

2. 결정의견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 분	면적(㎡)	적용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기호1)	489	586,000	286,554,000	-
건물(기호2)	116.88	1,280,000	149,606,400	원가법
제시외건물	7.5	150,000	1,125,000	관찰감가
합 계			<u>₩437,285,400</u>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0-6	대	보전녹지지역	489	489	586,000	286,554,000	
2	"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못안길 100-2	610-6 위지상	단독주택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2층 1층 2층	89 27.88	116.88	1,280,000	149,606,400	1,400,000 x 46/50
소 계								₩436,160,400	
ㄱ	(제시외건물) "	"	주택일부	샷시조 기타지붕 단층	(7.5)	7.5	150,000	1,125,000	관찰감가
합 계								₩437,285,4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소재 '신명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원주택 및 마을주변 농경지, 농가주택, 나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시외곽지대로서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남서하향 완경사지를 택지조성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북측으로 약 6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
기타 : 없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4) 부합물 및 종물 | (2) 이용상태
(5) 공부와의 차이 | (3) 설비내역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2020.07.16),

외 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의 구조임.

(2) 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3)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LPG가스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본건 지상에 부합물 혹은 종물로 판단되는 제시외건물(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 기호 ㄱ)이 소재하고 있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

건물감정평가요항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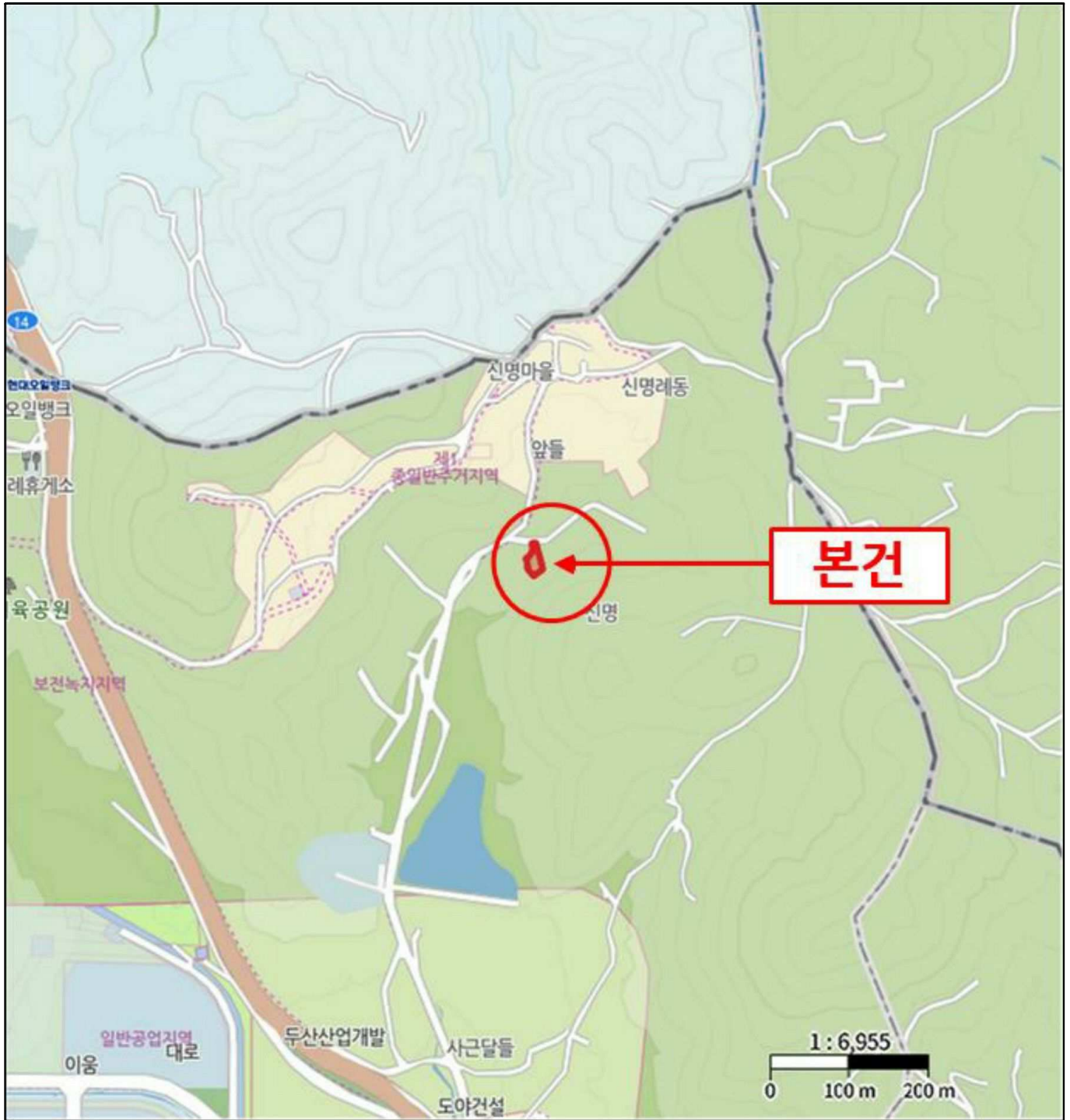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종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기타 : 없음.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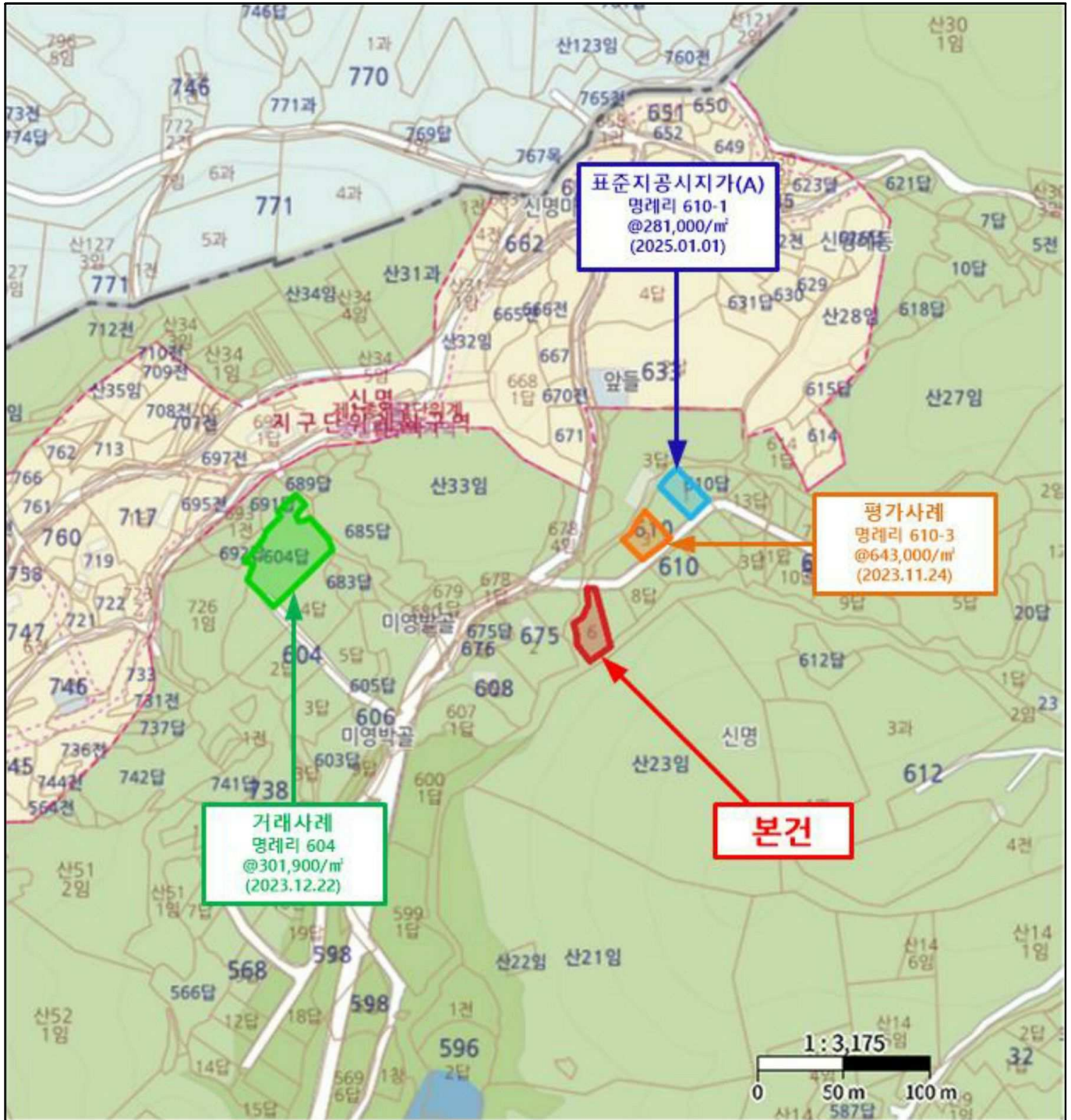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0-6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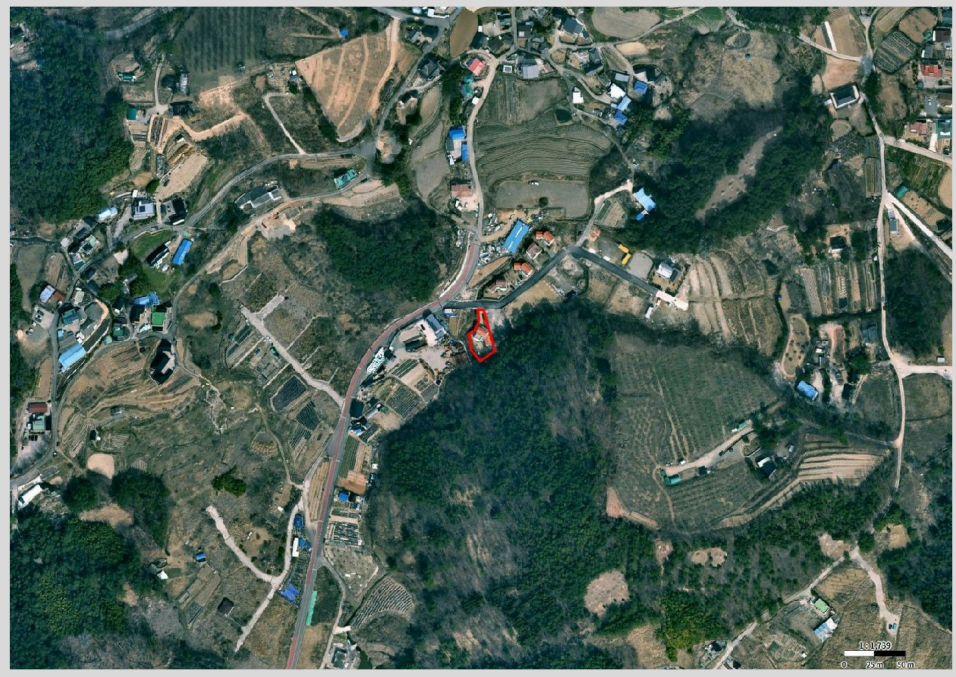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610-6
-----	-------------------------



지 적 및 건물 개 황 도





- ()



- ()



- ()

